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0호(號) 1935(昭和 10)년 2월 20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81호(號)

1932(昭和 7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35호(號)(일중국제여객 및 하물 연락운수규칙[日中國際旅客及荷物聯絡運輸規則]) 중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2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2조(條) 주유권(周遊券)의 항(項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등(等: 일본철도성선(日本鐵道省線)의 구간[區間] 중[中] 도쿄[東京]·시모노세키[下關] 간[間], 시모노세키[下關]·부산[釜山] 간[間] 및 하코다테[函館]·아오모리[靑森] 간[間] 이외[以外]의 구간[區間] 2등[等], 시모노세키[下關]·모지[門司] 간[間] 3등[等], 여순[旅順]· 저우쉐이쯔[周水子] 간[間] 2등[等], 닛신기선주식회사항로[日淸汽船株式會社航路] 특등[特等])

제31조(條) 여객운임표(旅客運賃表) 중(中) 시모노세키(下關)·도쿄(東京) 간(間)의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시모노세키(下關)—도쿄(東京) 간(間)	금원(金圓)	45.92	30.62	15.30

동상(同上) 중(中) 「뉴좡(牛莊)」을 「하북(河北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49조(條)1항(項) 중(中)「잉커우(營口)·거우방즈(溝帮子) 간(間)」을 「하북(河北)·거우방즈(溝帮子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65조(條)제1항(項)제2호(號) 일본철도성선(日本鐵道省線)의 행(行) 중(中) 「1등(等), 2등(等) 및 3등(等: 시모노세키[下關]·모지[門司] 간[間] 3등[等])」을 「1등(等: 도쿄[東京]·시모노세키[下關] 간[間], 시모노세키[下關]·부산[釜山] 간[間] 및 하코다테[函館]·아오모리[靑森] 간[間] 이외[以外]의 구간[區間] 2등[等], 시모노세키[下關]·모지[門司] 간[間] 3등[等]), 2등(等: 시모노세키[下關]·모지[門司] 간[間] 3등[等]) 및 3등(等)」으로 개정함.

제67조(條) 여객운임표(旅客運賃表) 중(中) 일본철도성(日本鐵道省)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구 간(區間)			킬로미터(粁程)	단 위(單位)	운 임(運賃)		
					1 등(等)	2 등(等)	3 등(等)
일본	도 쿄(東 京)—부산(釜山)		킬로미터(粁) 1337.1	금 원(金圓)	40.86	26.24	13.12
	요코하마(橫 濱)—동(同)		1308.3	동(同)	40.32	25.88	12.94
	나 고 야(名古屋)—동(同)		971.1	동(同)	33.81	21.54	10.77
	교 토(京 都)—동(同)		823.5	동(同)	30.66	19.44	9.72
	오 사 카(大 阪)—동(同)		780.7	동(同)	29.70	18.80	9.40
	산노미야(三ノ宮)—동(同)		750.1	동(同)	29.01	18.34	9.17
	고 베(神 戶)—동(同)		747.6	동(同)	28.95	18.30	9.15
	히로시마(廣 島)—동(同)		442.3	동(同)	20.43	12.62	6.31
	시모노세키(下關)—동(同)		240.0	동(同)	12.15	7.10	3.55
	모 지(門 司)—동(同)		255.0	동(同)	12.25	7.20	3.65
	하 카 타(博 多)—동(同)		334.0	동(同)	14.73	9.68	4.89
	구마모토(熊 本)—동(同)		453.1	동(同)	17.67	12.62	6.36
	나가사키(長 崎)—동(同)		495.4	동(同)	18.57	13.52	6.81
	센 다 이(仙 臺)—동(同)		1698.2	동(同)	45.30	30.68	15.34
	하코다테(函 館)—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2237.1	동(同)	55.43	36.02	19.53

철도성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1996.3	동(同)	49.49	39.06	18.01
	삿 포 로(札 幌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2523.4	동(同)	59.03	42.66	21.33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2282.6	동(同)	53.11	39.64	19.82
	도 쿄(東 京)-산노미야(三ノ宮) 또는 고베(神戸)		587.0	동(同)	18.57	12.34	6.19
	요코하마(横 濱)-동(同)		558.2	동(同)	17.94	11.96	5.98
	나 고 야(名古屋)-동(同)		221.0	동(同)	8.85	5.90	2.95
	교 토(京 都)-동(同)		73.4	동(同)	3.48	2.32	1.16
	오 사 카(大 阪)-동(同)		30.6	동(同)	1.47	0.98	0.49
	센 다 이(仙 臺)-동(同)		939.1	동(同)	23.33	17.14	8.57
	하코다테(函 館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1487.0	동(同)	33.46	25.52	12.76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1246.2	동(同)	26.32	22.50	11.25
	삿 포 로(札 幌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1773.3	동(同)	37.08	29.14	14.57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1532.5	동(同)	29.92	26.10	13.05
	도 쿄(東 京)-시모노세키(下關)		1097.1	동(同)	28.71	19.14	9.57
	요코하마(横 濱)-동(同)		1068.3	동(同)	28.17	18.78	9.39
	나 고 야(名古屋)-동(同)		731.1	동(同)	21.66	14.44	7.22
	교 토(京 都)-동(同)		583.5	동(同)	18.51	12.34	6.17
	오 사 카(大 阪)-동(同)		540.7	동(同)	17.55	11.70	5.85
	산노미야(三ノ宮)-동(同)		510.1	동(同)	16.86	11.24	5.62
	고 베(神 戸)-동(同)		507.6	동(同)	16.80	11.20	5.60
	히로시마(廣 島)-동(同)		202.3	동(同)	8.28	5.52	2.78
	하 카 타(博 多)-동(同)		94.0	동(同)	—	2.58	1.34
	구마모토(熊 本)-동(同)		213.1	동(同)	—	5.52	2.81
	센 다 이(仙 臺)-동(同)		1449.2	동(同)	33.15	23.58	11.79
	하코다테(函 館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1997.1	동(同)	43.28	31.96	15.98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1756.3	동(同)	37.33	28.92	14.46
	삿 포 로(札 幌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2283.4	동(同)	46.88	35.56	17.78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2042.6	동(同)	40.96	32.54	16.27
	도 쿄(東 京)-나가사키항(長崎港)		1353.6	동(同)	31.85	22.28	11.19
	요코하마(横 濱)-동(同)		1324.8	동(同)	31.31	21.92	11.01
	나 고 야(名古屋)-동(同)		987.6	동(同)	24.88	17.66	8.88
	교 토(京 都)-동(同)		840.0	동(同)	21.97	15.80	7.95
	오 사 카(大 阪)-동(同)		797.2	동(同)	21.11	15.26	7.68
	산노미야(三ノ宮)-동(同)		766.6	동(同)	20.44	14.82	7.46
	고 베(神 戸)-동(同)		764.1	동(同)	20.40	14.80	7.45
	히로시마(廣 島)-동(同)		458.8	동(同)	13.02	10.26	5.18
	시모노세키(下關)-동(同)		256.5	동(同)	—	6.44	3.27
	모 지(門 司)-동(同)		241.5	동(同)	—	6.34	3.17
	하 카 타(博 多)-동(同)		162.5	동(同)	—	4.66	2.33
	구마모토(熊 本)-동(同)		223.0	동(同)	—	5.94	2.97
	센 다 이(仙 臺)-동(同)		1705.7	동(同)	36.29	26.72	13.41
	하코다테(函 館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2253.6	동(同)	46.42	35.10	17.60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2012.8	동(同)	40.48	32.06	16.08
	삿 포 로(札 幌)-동(同)	동북선경유(東北線經由)	2539.9	동(同)	50.02	38.70	19.40
		호쿠리쿠센경유(北陸線經由)	2299.1	동(同)	44.10	35.68	17.89

제18조(條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1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1등승차권(一等乘車券)으로 일본국유철도(日本國有鐵道)의 구간(區間) 중(中) 1등차(等車)의 연결이 무(無)한 구간(區間)에 걸쳐 수하물(手荷物)의 탁송(託送)이 유(有)한 때는 여객 및 수하물 운송규칙[旅客及手荷物運送規則] 제3백19조(條)제3호(號)에 의(依)해 수하물무임운송중량(手荷物無賃運送重量)의 계산(計算)을 함.